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「공인중개사법」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

2년마다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며,

시·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

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가능합니다.

○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

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

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고, 자치구 7곳은 최근 3년 간

단 한 차례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

연수교육에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.

-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구 간 교육 편차 완화 및 교육 내실 강화를 이끌어내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